

의안 번호	2555	【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2. 26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2. 26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3. 12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주택단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나, 어린이 수 감소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는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임.
-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, 지원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(안 제4조~제6조)
- 신청 및 지원 절차(안 제7조)
- 환수조치(안 제8조)
- 관계규정 준용(안 제9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제85조제1항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5조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미숙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기준, 적용범위,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예산지원 근거에 대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.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대상 현황과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요구됨.

4. 심사결과 : 부결 (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)

5. 부결사유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중복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
-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만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낮아 부결하고자 함.

【근거법규】

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34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(이하 “소규모 공동주택”이라 한다)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85조(관리비용 등의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,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·진단에 필요한 비용(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을 포함한다)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

제5조(지원대상)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.

1. 단지안 주도로, 보도, 주차장의 유지·보수
2.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·보수 및 준설
3.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·보수(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)
4.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
5.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, 경로당 유지·보수
6.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
7.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·보수
8. 건물 공용부분(공용계단실, 옥상, 외벽 등)에 대한 유지·관리 및 보수
9.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)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
10. 단지안 수목관리(전지, 파쇄)

11.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
 12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·구조활동 및 「소방기본법」제16조제1항, 제16조의3제1항과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·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
 1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1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
 2. 국가유산 보호구역지정지역
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
 4. 소규모 공동주택
 5.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

제10조(예산지원)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